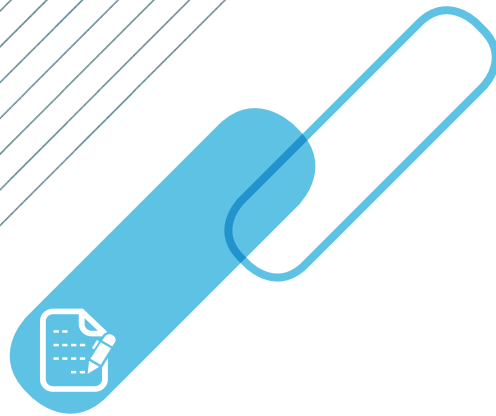


제5부

기타 사례

제1장 안내문 조치 및 불문 사례

제2장 기타 논의사항



제1장

안내문 조치 및 불문 사례

1. 안내문 조치 사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 제재 조치(정정보도·반론보도·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크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9건의 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주간한국은 2월 12일자 14면에 특정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 게재 시점, 크기, 내용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으나 출마예정자의 인터뷰 기사 연재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만을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안내문 송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선거 초반 연재 계획 등의 언급 없이 특정 전라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전주매일, 특정 충청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음성군자치신문, 진천군자치신문에도 각각 안내문을 송부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하남시장, 오산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선정일보에 대해서도 안내문 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 후보자의 출마의 변만을 게재할 경우 여타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각 후보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 보도할 시 기사형식, 게재지면, 기사의 양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영남매일은 2월 22일자 3면에 특정 대구시장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는 실과 바늘과 같은 사이'라고 보도하는 등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일부 사용해 안내문 송부 조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대구 수성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예비후보가 전체 후보자 중 1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도 순서만을 나열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도를 강조한 제목으로 인해 독자들이 자유한국당 내 1위인 후보자가 전체 후보자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심의위원회는 모 체육협회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경상북도지사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견과 해명만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대구경북일보, 특정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일부 우호적인 의견을 담은 제목과 기사를 보도한 The함안신문에 대해서도 안내문 조치했다.

■ 안내문 조치 사례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주간한국	2월 12일	14	“대구를 수성구처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공정성/형평성
대구영남매일	2월 22일	3	사공정규 위원장의 ‘인생과 정치철학’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영남일보	2월 23일	4	한국당 후보 지지도, 오차범위 내 김대권·남상석·정순천·안용모 順	여론조사 보도
대구경북일보	3월 20일	11	이철우, 허위사실 유포와의 전쟁 선포	공정성/형평성
전주매일	3월 15일	16	전북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성/형평성
음성군 자치신문	3월 21일	3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진천군 자치신문	3월 16일	3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The 함안신문	3월 15일	9	공민배 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선언 ‘뱃물’	공정성/형평성
선경일보	4월 13일	5	오수봉 하남시장 출마의 변	공정성/형평성
		7	오산시장 곽상욱 출마의 변	

2. 불문 사례

선거기사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정 후보자의 인물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당선가능성과 인물선호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기사가 아닌 칼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을 인물선호 변수 중 하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불문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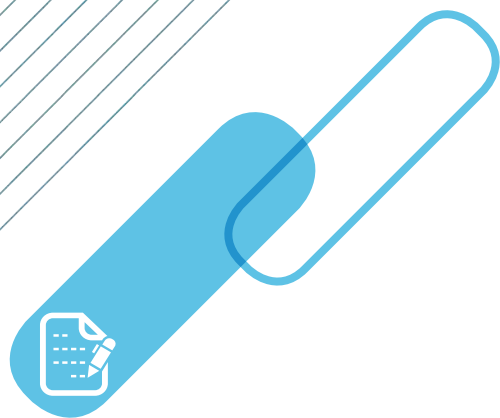
3월 13일자에 특정 포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인터뷰를 1면에 게재한 포천뉴스의 경우, 언론사측에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후 발행호에 타 후보의 인터뷰가 게재된 것이 확인되어 불문 결정했다. 또 포천뉴스 5월 3일자 ‘포천시장후보 3인 인터뷰-첫 번째’ 제목의 기사는 일반적인 인터뷰 기사 형식이 아닌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보도

해 선거기사 심의규정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위반소지가 있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취재기자명이 기재되지 않아 출처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은 있지만 이후 게재된 타 후보자 인터뷰 기사
의 크기, 내용, 위치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불문 결정했다.

서귀포신문은 선거에 재출마예정인 현직 제주교육감의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나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4·3 사건과 관련한 교육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인물 부각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문 결정했다.

■ 불문 사례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인천일보	3월 13일	11	숫자로 보는 출판기념회	객관성 및 사실보도
포천뉴스	3월 15일 (103호)	1	오로지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포천뉴스	5월 3일 (107호)	3	포천뉴스 포천시장후보 3인 인터뷰 - 첫 번째 기호1 포천시장 박윤국 후보	인터뷰 및 인용기사
서귀포신문	3월 29일 (112호)	4	禱.3은 교육과 문화로 기억, 전승될 것"	공정성/형평성



제2장 기타 논의사항

1.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범위에 관한 해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이번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 1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다. 그런데 4월 2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 당의 당명은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하였고,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방송연설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의 정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33조제1항 후문에 따라 둘 이상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²⁾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3. 21. 서면질의회답 내용 참조(<http://law.nec.go.kr/lawweb/necwWqrelnqy1030.do?genActiontypeCd=2ACT1012&winWd=900&winHg=900&qnaId=201803220001>)

2. 시정요구 주체인 ‘후보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제8조의2제6항 준용)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통상 선거일 이전에 제기된 후보자 시정요구 안건만을 처리해왔으나 이번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이후인 2018년 6월 27일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 보도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접수되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위에 ‘후보자였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자’는 후보자였던 자를 포함하며,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보도된 것을 안 날부터 시정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에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³⁾하였다.

중앙선거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이후 제기된 후보자 시정요구 안건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2018지선-시심12)을 내렸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6. 27. 인터넷질의회답 내용 참조(<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77442?menuNo=200560>)